



공안을 새롭게  
시민을 행복하게

의안번호

제17호

## 논산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논 산 시 장
제출연월일	2024. 2. 13.

# 논산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17호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24. 2. 13.  
제 출 자 : 논 산 시 장  
제안설명자 : 환 경 과 장

## 1. 제안이유

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 개정에 따른 조례 내용 개정

## 2. 주요내용

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안심비상벨 등 안전  
관리 시설 설치 기준 내용 추가

**※ 관내 공중화장실 102개소(시 관리 100개소, 도 관리 2개소) 안심벨 설치  
완료(2023.12.14.)**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참고 참조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다. 기타사항

1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[기획감사실-129(2024.01.04.)호]

2) 성별영향평가 : 개선사항 없음[복지정책과-571(2024.01.05.)호]

3) 규제심사 : 규제심사 대상 아님[예산실-15352(2023.12.29.)호]

4) 입법예고

가) 예고기간 : 2023. 12. 29. ~ 2024. 01. 18.(20일)

나) 결과 : 의견 제출 없음

5) 비용추계서 : 붙임 참조

6) 충청남도 소관실과 : 충청남도 물관리정책과

□ 개정조례안

논산시 조례 제 호

## 논산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논산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의2(안전관리 시설의 설치) ① 법 제7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 
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시장이 설치·관리하는 공중화장실
2. 시장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된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 
공공기관의 공중화장실(제1호 적용대상 제외)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, 관리자 또는 경찰관서의 현장대응시  
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 
공중화장실 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.

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수수”를 “수”로 한다.

제11조제2항 단서 중 “한하여”를 “한정하여”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
소 관 부 서	성 명
입	환 경 과 장 홍 성 문
안	수 질 관 리 팀 장 손 현 주
자	담 당 자 김 현 아 (746-5555)



<p>1. ~ 4. (생략)</p> <p>제11조(화장실의 개방) 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. 다만,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되거나 지역의 여건상 유지, 관리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<u>한하여</u> 개방할 수 있다.</p>	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1조(화장실의 개방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한정하여</u> ----- -----.</p>
--	--

**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**

○ 해당없음

**2. 비용추계결과****가. 추계의 전제**

○ 해당없음

**나. 추계결과**

○ 해당없음

**3. 작성자**

환경과장 홍성문

## □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

제7조(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) ① 공중화장실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,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·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,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등의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 대·소변기 수의 1.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.

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에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하여야 하며,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위환경과 조화되는 화단, 휴식시설, 판매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8조를 준용한다.

④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등에 비상벨(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)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,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조례로 정한다.

⑤ 공중화장실등을 설치·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에 대변기 칸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.

⑥ 공중화장실등에서 발생하는 오수 및 분뇨는 「하수도법」에 따라 처리한다.

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